##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70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서천호·우재준·이만희

서명옥 · 김선교 · 김예지

조경태 · 최보윤 · 박덕흠

조정훈 · 김용태 · 김장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산불 발생 횟수는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21년 361억 2,500만원으로 1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1.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 초를 버린 사람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 3.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 제76조(벌칙) ① ------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 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제7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같음)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신 설> 1.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 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 <신 설> 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점 <신 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
   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
   에 들어간 사람
-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 3.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삭 제)

5	 <u>제3항</u>	